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2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서천호·김선교·나경원
박덕흠·김종양·김장겸
조인철·김기현·서일준
윤영석·임종득·최보운
김희정·안철수·김소희
이철규·김태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하여 그 하류지역 및 연안 지역에서 육지 쓰레기의 유입 및 담수화 등으로 어장 피해 등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특히 최근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 · 대청댐 · 섬진강댐 · 용담댐 · 합천댐 · 주암댐 · 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 ·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7개 댐”이란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을 말한다.
2.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란 2020년 이후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말한다.
3. “7개 댐 피해지역”이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5조에 따라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가. 7개 댐 과다방류 당시 7개 댐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 나. 7개 댐 과다방류 당시 7개 댐 피해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어업 활동 등을 하고 있던 자
- 다. 7개 댐 과다방류 당시 7개 댐 피해지역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 라. 그 밖에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의 피해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

제5조(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 ①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개 댐 피해지역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 기간 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상조사)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7

개 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7개 댐 방류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조사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각하결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진상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와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

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7개 댐 피해지역 구제 및 지원

제13조(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① 7개 댐 과다방류 피해 관련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개 댐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7개 댐 피해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7개 댐 과다방류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의 보상을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7개 댐 과다방류 피

해로 침체된 7개 댐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7개 댐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7개 댐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7개 댐 피해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진상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

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0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가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7개 담과 다방류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3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26조를 위반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 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

나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